

—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01. 7. 1부터 시행하는 등록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문화재로서 보존 및 활용.

3. 주요내용

【 제9조 】

-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 ⇒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
(2001. 3. 27 : 문화재 보호법에 등록 문화재 신설)
-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 신설

4. 참고사항

-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

5. 검토의견

-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등록 문화재 조항이 신설되면서 등록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케 하는 개정조례로서 조례표준안 대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.